
윤리강령

Code of Conduct (CoC)

친애하는 사우님 및 사업파트너님 들께,

레드밴스 윤리강령은 모든 임직원의 행동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임직원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충족시킬지를 제시합니다. 본 지침은 회사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협력사 및 공공부분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인권, 반부패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법 규정 및 국제 조약이 본 윤리강령의 기본 형태이며, 이는 회사의 기업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법률 및 도덕 기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최대한의 개인적인 청렴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윤리강령은 레드밴스 준법 관리 체계의 핵심 부분이며 레드밴스는 준법이 모든 의사결정 및 행동의 기본이 됩니다. 특히, 부패 및 기타 공정 경쟁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레드밴스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준법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며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길이며 청렴성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윤리강령은 전 세계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윤리강령 및 레드밴스 준법 관리 시스템의 구성 내용은 당사 준법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본 강령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레드밴스 준법팀으로부터
2021 년 1 월

함유량

A. 기본 행동 요건	4
A.1 법률 준수 행동	4
A.2 상호 존중, 정직 및 청렴성	4
A.3 레드밴스 명성에 대한 책임	4
A.4 관리자, 책임 및 감독	5
B. 협력사 및 삼자에 대한 대우	6
B.1 공정 경쟁 및 독점 금지법	6
B.2 반 부패: 편의 제공 및 공여	6
B.3 반 부패: 편의 요구 및 수용	8
B.4 정치 후원, 자선 기부 및 후원	8
B.5 정부 조달	9
B.6 돈 세탁 금지	9
B.7 무역 통제	9
B.8 공급업체와의 관계	10
C. 이익 충돌 회피	11
C.1 레드밴스와의 경쟁	11
C.2 부업	11
C.3 제 3자 기업에 대한 이익	11
D. 회사 자산의 처리	13
E. 정보의 처리	14
E.1 기록 및 재무 투명성	14
E.2 기밀유지	14
E.3 정보 보호 및 자료 보안	15
F. 환경, 안전 및 보건	16
F.1 환경 및 기술 안전	16
F.2 안전 근무	16
G. 내부 고발	17
H. 준법 수행 및 감시	18
I. 추가 정보 및 연락처	18
J. 국제 기구의 협약 및 권고사항	19

A. 기본 행동 요건

A.1 법률 준수 행동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의 법률 및 법규체계의 준수는 레드밴스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전 임직원은 레드밴스 방침 및 법규체계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법규위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피하여야만 한다.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처벌은 별도로 하고 위반을 한 직원은 업무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조치 대상이 될 것이다.

A.2 상호 존중, 정직 및 청렴성

회사는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각 개인의 사적 권리를 존중한다. 우리는 다양한 민족적 배경, 문화, 종교, 연령, 장애, 인종, 성 정체성, 세계관 및 성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근무한다. 회사의 기업원칙과 우리가 일하는 수많은 국가의 취업규칙에 따라 성적이거나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차별, 괴롭힘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사내 협력 및 외부 사업 파트너와의 행동 모두에 적용된다. 당사는 함께 근무하는 개인, 공급자, 고객 그리고 사업파트너를 포함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강요와 같은 부적절한 조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는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회사는 우리의 임직원들이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

A.3 레드밴스 명성에 대한 책임

레드밴스의 명성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들 각자 맡고 있는 업무 수행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단 한 명의 직원에 의한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동은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은 각 나라마다 레드밴스에 대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A.4 관리자, 책임 및 감독

조직 내에서 청렴 및 준법 문화는 위로부터 시작한다. 모든 관리자는 조직에서 의무 및 감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모든 관리자는 자신에게 위임된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며 모범적인 개인 행동, 성과, 개방성 및 사회적 능력으로 존중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은 각 관리자는 윤리적 행동 및 준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것들을 일상업무의 정기적인 주제로 삼아 개인적인 리더십과 교육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관리자는 명확하고 원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모범을 보임으로써 리더해야 한다.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가능한 많은 개인적 책임과 재량을 허용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항상 자율준수가 요구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관리자는 또한 직원이 준법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업무 또는 개인적 문제로 질문 및 상담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리자의 책임이 종업원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모두는 관련 법률과 레드밴스의 방침을 준수하도록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리자의 특별 책임은 직원들에게 리더십의 개념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상사로부터 기대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목록화 되어 있다.

본 내용은 관리자의 책임범위 내에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어떠한 법규위반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며 이는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

다음의 의무가 관리자에게 적용된다:

1. 관리자는 직원 개인 및 업무적 자격과 적합성에 근거하여 직원들을 신중히 선발해야 하며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요성에 따라 적절한 주의의무를 진다 (선발의 의무).
2. 관리자는 준법 관련하여 정확하고 완전하며 구속력 있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지시의 의무).
3. 관리자는 준법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는지 확인 해야만 한다 (점검의 의무).
4. 관리자는 일상 업무에서 청렴과 준법의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 하여야 하며 법률 위반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결과로 고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의무).

B. 협력사 및 삼자에 대한 대우

B.1 공정 경쟁 및 독점 금지법

공정한 경쟁은 시장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게 하며 부수적인 사회적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공정의 원칙은 시장점유율 경쟁에도 적용된다.

모든 직원은 공정경쟁의 룰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반독점 평가는 법률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지역에서 특별 반독점 금지법은 대기업에만 적용된다.

아래의 예시는 반독점 법 위반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들이다.

직원의 행동 금지항목은:

- 가격, 생산량, 생산능력, 판매, 입찰, 이익, 수익률, 원가, 유통방식 또는 경쟁행동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주기 위해 경쟁사와의 담합을 유도하는 대화.
- 경쟁 포기, 공급자 제한, 입찰에 허위 제안서 제출 또는 고객, 시장, 지역, 생산 프로그램을 나눠가지는 등의 계약체결.
- 구매자에게 재판매가격에 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레드밴스에 의해 공급되는 상품의 수출 및 수입을 제한하는 시도.

더욱이 직원은 산업스파이, 뇌물, 절도 또는 전자도청을 이용하여 경쟁정보를 얻으려고 하거나 경쟁자 및 경쟁자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의적인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B.2 반 부패: 편의 제공 및 공여

당사는 다른 이에게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및 가격으로 공정하게 경쟁한다. 이러한 결과로 어느 직원도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또는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공무원에게 금전 또는 어떠한 종류의 편의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 약속, 용인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직원은 없다.

부적절한 이익이라는 전제하에 사기업과의 상업 거래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떠한 편의 제공, 약속, 용인 또는 선물은 해당 법률 및 레드밴스의 정책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부정직 또는 부적절한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의 의미는 공무원 또는 사업파트너에 대한 뇌물과 같은 것으로 레드밴스의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이러한 제안, 약속, 보조금 또는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라 함은 어떤 위치에 있던지 공무원,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 대리인 또는 법적 단체, 주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의 임직원들 그리고 국제공공기구의 임직원 등을 포함하여 넓게 정의되며 정부직 후보자, 정당관계자 및 직원, 정당도 포함된다. 더욱, 직원은 그 상황이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컨설턴트, 대리인, 중개인, 사업파트너 또는 다른 제 삼자를 통해) 아래에 해당 되는 사람에게 전달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면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것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공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고자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 사업거래에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자 사기업 거래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행위

컨설턴트, 대리인, 합작투자파트너 또는 기타 사업파트너와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은 아래와 같이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 레드밴스의 반부패 방침 또는 이와 유사한 정책을 이러한 제 삼자가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 삼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평판을 평가하여야 하며
- 레드밴스를 보호하기위한 계약서에 적절한 규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사안은 레드밴스를 대신하여 공무원과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삼자도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회사에 의해 결정된 투자결정은 – 기업의 지배지분 또는 소수지분의 구매, 또는 합작투자협정이든지 – 사전 준법 점검을 기반으로 진행 하여야 한다.

B.3 반 부패: 편의 요구 및 수용

직원은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수락, 획득 또는 약속을 받기 위해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사소한 선물 또는 식사, 국내 관습 및 관행, 레드밴스

정책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접대의 수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어떠한 종류의 선물, 식사 또는 접대는 거절하여야 한다.

B.4 정치 후원, 자선 기부 및 후원

레드밴스는 정치후원을 하지 않는다 (정치인, 정당, 정치적 조직에 대한 기부). 단,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레드밴스는 교육 및 과학, 예술 및 문화, 사회 및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위한 현물 또는 제품기부는 진행 할 수 있다.

레드밴스가 광고를 하기 위한 후원, 사업이익을 제공하는 산업협회에 대한 비용 또는 단체 가입비는 기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래의 기부 행위는 금지된다.

1. 개인 및 영리단체에 대한 기부;
2.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기부;
3. 레드밴스의 기업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기부; 또는
4. 레드밴스의 명성을 해칠 수 있는 기부.

모든 기부는 투명해야 한다. 이것은 수령자의 신분, 기부금 사용계획은 반드시 명확해야 하고 기부 사유 및 목적은 정당해야 하며 문서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유사기부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보여지지만 서비스의 가치보다 큰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명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인바 금지된다.

후원은 제3자에 의해 기획된 행사에 레드밴스 상표 등을 광고하는 기회를 얻는 대신에 금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레드밴스 로고의 전시, 개회식 또는 폐회식에 회사명 언급, 행사에 초대장 제공뿐만 아니라 토론회의 발표자로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후원 제공은 합법적인 사업목적에 위해 서면 합의에 따라 투명하여야 하며 행사 주최자에 의해 제공된 대가에 비례해야만 한다.

레드밴스의 부당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또는 기타 부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안되며 레드밴스의 기업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을 가졌거나 레드밴스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의해 기획된 행사에 대한 후원도 금지된다.

B.5 정부 조달

레드밴스는 전세계의 정부기관 및 정부소유 기업과 계약진행을 위해 경쟁한다. 정부와의 거래 및 상호활동에 있어 우리는 투명하고, 정직하며 명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을 금지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

B.6 돈 세탁 금지

돈세탁은 “부정한 돈”으로 통칭되는 범죄활동과 - 예를 들면, 테러, 마약밀매, 뇌물 - 관련된 자금의 성질과 출처를 숨기는 절차로, 상거래의 흐름 속에서 합법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출처가 진실되게 보이게 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합법적인 사업활동에 관련되어 있고, 그들의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를 가진 평판 있는 고객, 컨설턴트 및 사업파트너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레드밴스의 목표이다. 우리는 돈세탁을 조장하지 않으며 모든 직원은 돈 세탁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급명세, 고객, 기타 거래에 대한 탐지 및 방지를 위해 해당 자금 세탁 방지법 및 레드밴스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런 분야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은 고객, 컨설턴트, 그리고 사업파트너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고 보고를 해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반드시 기타 거래 및 계약과 연계된 현금 및 지불에 대한 적용 가능한 모든 회계처리, 기록관리 및 재무보고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B.7 무역 통제

레드밴스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수출 통제 및 관세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수출통제는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포함하여 어떤 특정국가에 대한 상품,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이동에 적용된다.

수출통제법은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 또는 당사자와의, 예를들면 국가안보에 기초하여 지정되었거나 범죄행위에 관여한 이유로, 직접 또는 간접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측발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과 규정의 위반은 심각한 벌칙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정부기관의 간소화된 수출 및 수입 절차의 폐지 (원활한 공급망 중단) 및 벌금을 수반할 수 있다.

위에 기술한 상품,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입에 관련된 직원은 적용 가능한 경제 제재, 수출입 통제법 및 규칙과 해당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이와 관련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B.8 공급업체와의 관계

기업으로써 레드밴스는 공급업체가 레드밴스의 가치를 공유하며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더욱이, 레드밴스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관한 책무에 있어 공급업체가 레드밴스에 의해 채택된 아래 원칙들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준수,
- 부패 금지,
- 종업원 기본 인권 존중,
- 미성년 노동 금지법 준수,
-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
- 환경보호에 관한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국제표준에 따른 행동,
- 공급자에 대한 준법 증진 활동.

C. 이익 충돌 회피

레드밴스 임직원 의무는 임직원 자신의 이익에 근거한 업무결정이 아니라 레드밴스의 최고 이익에 따라 업무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익충돌은 직원이 레드밴스의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업무를 하거나 개인이익을 우선시할 때 발생한다.

직원은 업무수행과 연계하여 어떤 개인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원은 레드밴스를 위하여 업무 활동 하는 업체로부터 개인 거래 및 주문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해당 업체와의 거래는 용인되지 않는다.

본 사안은 레드밴스와의 계약체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원이라면 더욱 특별히 적용된다.

이익충돌은 직원이 레드밴스에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는 레드밴스 경쟁업체 또는 고객과의 사업에서 이해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부업활동의 참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모든 직원은 직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익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있을 경우 이를 인식하고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충돌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까운 친척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C.1 레드밴스와의 경쟁

레드밴스의 임직원은 레드밴스와 경쟁하거나 경쟁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를 운영하거나 도울 수 없다.

C.2 부업

직원은 레드밴스와 경쟁이 되는 부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를 받는 부업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직속 상사에게 알려야 하며 서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비정기적인 작문 활동, 강의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은 부업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레드밴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업은 허가되지 않으며 직원이 업무 중 문제 있는 회사와 거래중인 경우에 승인은 거절되며 이전의 승인도 이에 근거하여 취소될 것이다.

C.3 제 3자 기업에 대한 이익

경쟁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 또는 취득한 직원은 만약 해당 주식이 그 회사의 경영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주식이 경쟁사의 전체 자본의 5%를 초과할 때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레드밴스의 사업 파트너 또는 레드밴스가 지배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직원 또한 만약 사업 파트너와 거래하고 있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그 회사에서 직위를 유지 할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상장사의 경우 총 자본의 5%를 초과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된다.

제 3자 기업에 대한 지분소유를 알게 될 경우, 회사는 이익충돌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D. 회사 자산의 처리

레드밴스의 사무실과 공장에는 이메일 및 자동응답기를 포함한 전화기, 복사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인트라넷, 기계 및 공구와 같은 많은 장치와 설비들이 있다. 이것들은 개인적 이익이 아닌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만 하며 예외적으로, 비용지불을 하거나 현지에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레드밴스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불법적인 활동에 관련된 사항,
- 이익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
- 직원 본인 또는 다른 직원에게 부여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레드밴스의 사업에 혼란 또는 불리한 효과가 야기되는 사항.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증오, 폭력찬양 또는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하거나 증진시키는 정보,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자료를 검색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된다.

직원은 회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상사의 승인 없이 기록, 파일, 비디오 및 오디오 녹음 또는 레드밴스의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하여 복제물 제작을 허용하지 않는다.

E. 정보의 처리

E.1 기록 및 재무 투명성

공개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보고서가 필요하며 이는 공공 및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투자자, 직원, 고객 및 사업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레드밴스는 또한 모든 거래가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실행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와 통제장치들을 유지해야 하며 레드밴스는 회사 자산의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감지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레드밴스 직원은 그들이 맡고 있는 레드밴스의 장부 및 기록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 완벽하게,
- 정확하게,
- 각 거래 또는 비용을 정직하게 반영해야 하고,
- 적용 가능한 회계 규칙 및 기준에 따라 시기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은 해당 정보가 공개 파일에 관리되거나 정부기관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해당되며 이러한 장부 및 기록물의 모든 데이터, 인증서 및 재무보고 및 공개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포함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지출계좌보고서와 같은 내부비용보고서도 포함한다.

E.2 기밀유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레드밴스의 내부 기밀 또는 독점적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공급자, 고객, 직원, 대리인, 컨설턴트 및 기타 제 삼자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는 법률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보호되어야만 한다.

기밀 또는 독점적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특히:

- 회사의 조직 및 설비, 가격, 매출액, 이익률, 시장상황, 고객 및 사업관련 세부내용,
- 제조 또는 연구개발 정보
- 내부 보고용 자료들.

기밀 유지 의무는 기밀 정보가 공개 될 때마다 레드밴스의 사업, 고객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사업관계의 종료를 넘어서서 확장 적용된다.

E.3 정보 보호 및 자료 보안

인트라넷과 인터넷 사용, 전세계의 전자 정보 교환 및 소통, 전자 상거래는 우리 모두의 업무 효율성 및 사업 성공을 위한 결정적 요소이다. 이러한 전자통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자료 보안 측면에서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은 정보기술관리, 리더십 기능 및 모든 구성원의 행동에 있어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개인정보는 그 필요성이 사전에 결정되고 명확해야 하며 합법적인 목적일 경우에만 수집, 처리 또는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 되어야 하며 전송 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데이터 품질 및 무단 접근에 대한 기술적 보호와 관련하여 높은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사용은 관련 당사자에게 투명해야 하며 관련 정보의 사용 및 수정, 해당된다면, 정보의 차단 및 삭제에 관계된 이의제기, 에 있어 보호되어야만 한다.

일부 사법기관 (유럽연합)에서는 고객 또는 사업파트너와 같은 타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법률 및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임직원은 타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적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러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F. 환경, 안전 및 보건

F.1 환경 및 기술 안전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최우선 사항이다. 경영진의 리더십과 직원의 헌신을 통해 레드밴스는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레드밴스는 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전 세계적 환경 관리 시스템을 수행해 왔다.

제품 개발 단계부터 환경 친화적 디자인, 기술적 안전 및 건강 보호는 우리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 임직원은 각자 맡은 직무에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만 한다.

F.2 안전 근무

사업장에서 직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는 레드밴스의 최우선 가치이다. 레드밴스의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모든 직원의 책무이다. 직원의 책임은 최선의 사고예방조치가 필요하며,

- 작업장, 설비 및 절차의 기술적 계획,
- 안전 관리 및
- 일상 작업현장에서의 개인 행동에 적용된다.

작업 환경은 건강 중심의 설계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직원은 항상 안전근무를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G. 내부 고발

모든 직원은 직속상사, 준법감시인, 인사담당자 또는 관련인,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본인의 고충을 토로할 수 있다.

윤리강령과 관련한 사항은 본사 및 현지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고발시스템인 “레드밴스 청렴 라인 (LiLi)”을 통해 알릴 수 있다.

모든 내부고발은 비밀 및 익명으로 알릴 수 이으며 관련 사항은 신중히 조사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가 수행될 것이다.

모든 문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기밀을 유지하며 내부고발에 대한 어떠한 보복조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H. 준법 수행 및 감시

레드밴스의 경영진은 전세계에 걸쳐 윤리강령이 광범위하게 퍼지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며 잘 실행되길 또한 기대한다.

법률 및 윤리강령의 준수는 정기적으로 점검되며 이는 해당 국가의 절차 및 법률 규약에 따라 수행된다.

준법조직은 레드밴스 본사 및 각 지사별로 레드밴스 준법시스템이 잘 시행되도록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I. 추가 정보 및 연락처

청렴은 우리 모두의 행동 중심에 있으며 본 지침은 당사의 사업에 있어 “청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윤리강령으로 전반적인 설명과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바 아래 레드밴스 준법 인트라넷 웹 사이트에 본 지침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참조 : [준법인트라넷 웹 사이트](#)

만약 레드밴스의 직원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다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으며 해당 직원은 상사, 준법감시인 및 준법팀에 알릴 수 있다.

또한, 레드밴스는 직원이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상사 및 준법감시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즉 “레드밴스 청렴 라인 (LILI)”을 통해 연락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다 (<https://www.bkms-system.net/lili>).

J. 국제 기구의 협약 및 권고사항

개별 국가의 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국제기구의 협약 및 권고사항이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주요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 및 그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지침으로 역할을 한다. 레드밴스는 이러한 협약 및 권고사항을 지지한다.

따라서 레드밴스는 전 세계의 임직원, 공급자 및 사업파트너가 아래 기준에 대해 인식하고 업무에 적용할 것을 기대한다.

- 세계 인권 선언 (UN) (1948)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1950)
- ILO (국제노동기구) 다국적 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의 삼국 선언 (1977) 및 ILO 직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1998) (특히 다음의 이슈: 아동 노동 폐지, 강제 노동 금지, 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 (2000)
- 지속발전에 관한 “Agenda 21” (환경 및 개발에 관한 UN 총회 최종 문서, Rio de Janeiro (1992))
- UN (United Nations) 부패방지 협약 (2005).



LEDVANCE

LEDVANCE GmbH
General Counsel
Compliance Office
Parking 33
85748 Garching
Germany